

#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2월 7일 김포시장  
나. 회부일자 : 2004년 12월 10일  
다. 상정일자 : 2004년 12월 13일  
라. 의결일자 : 2004년 12월 14일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이 이자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복지기금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 출연금으로 매년 10억원씩 5년간 50억원을 조성한 후 사용토록 되어 있어 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기 전이라도 기금이 꼭 필요한 경우에 당해연도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안 제4조 제3항)
- 기금집행은 운용관리를 위하여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입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고 나머지는 지출할 수 있다.(안 제4조 제4항)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2002년 동 조례가 제정된 후 매년 10억원씩 5년간 총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및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2003년도 10억원의 기금이 적립된 후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적립이 중지되어 목표금액인 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목표금액 조성 전이라도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제정의 근본 목적이 50억원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면 되겠음.
- 또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안 제4조 4항 “ 10퍼센트 ” 를 “ 100분의 10 ” 으로 안 제11조 제3항의 “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 일 전까지 ” 를 “ 다음 회계연도 8월까지 ” 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